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57
----------	------

제출년월일 : 2006년 1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자동차관리법령, 임대주택사업법령,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관련 조문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m'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를 면제대상에 포함
-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법령 개정으로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으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경감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불필요하여 감면조문 삭제 (제15조, 제21조)
-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50%경감하는 규정중 건축물이 건축물과 주택으로 분리됨에 따라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수정(제16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대상에 추가되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제22조)
-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시세감면조례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감면기한을 2005.12.31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의 일몰규정이 삭제됨으로, 도세와 시세의 감면형평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의 기한을 폐지(제24조)

3. 근 거 법령 : 지방세법(붙임)

○지방세법 [법률 제7843호, 2005.12.31일부개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16호, 2005.12.31일부개정]

4. 의안전문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첨부: 1. 입법예고 결과 1부

2. 참고법령 1부

3. 기타참고자료(표준안) 1부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 · 지상 건축물 · 주택”으로 한다.

제21조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한다.

제22조제1호중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를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부 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p> <hr/> <hr/> <hr/> <p>_____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 제한다</p> <p>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 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 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 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를 제외한다)</p> <p>2. ~4.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hr/> <hr/> <hr/> <p>_____ .</p> <p>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 동차</p> <p>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 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 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 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 다)</p> <p>2.~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

신·구조문대비표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_____ _____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 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p> <p>2. ~4.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_____ .</p> <p>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 동차 가.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 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 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 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한다)</p> <p>2.~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신·구조문대비표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 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 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p>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p>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삭 제></p>
<p>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p>	<p>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토지·지상 건축물·주택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p> <p>과세 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p> <p>_____ _____ 창고용 _____ _____ _____</p>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p>제2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p> <p>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u>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u>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p>1.~2. (생략) ② (생략)</p>	<p>제2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p> <p>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취득하는</u>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	--

□ 근 거 법령

지방세법

[법률 제7843호, 2005.12.31.일부개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16호, 2005.12.31일부개정]

제2조 (과세면제등 허가신청<개정 1988.5.7>)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조례안, 관련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사업수지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면제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세목 및 세율
3.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방법
4. 과세면제등의 기간 및 그 사유
5. 과세면제등에 의한 세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참 고 법 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71호]

第3條 (自動車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2.5 건설교통부령 423호]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아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아하로 된 자동차
 -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축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第121條의2 (外國人投資에 대한 法人稅 등의 減免)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外國人投資(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规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规定하는 바에 따라 法人稅·所得稅·取得稅·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減免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1. 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強化에 繫要한 產業支援서비스업 및 高度의 技術을 隨伴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规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영위하는 사업
 -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3. 기타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하여 稅稅減免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②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6號의 规定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減免對象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에 한하여 減免하되, 당해 사업을開始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所得이 발생한 課稅年度(事業開始日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당해事業所得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각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外國人投資比率(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額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減免對象稅額을 산정함에 있어서 外國人投資企業이 減免期間중에 內國法人(減免期間중인 外國人投資企業을 제외한다)과 合併하여 당해 合併法人의 外國人投資比率이 감소한 때에는 合併전 外國人投資企業의 外國人投資比率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③~⑫ (생략)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 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9.16>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2.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 ②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9.16>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 ③ ~ ⑥ (생략)

★도세담당	세정과장				
박문수	전결 01/03 최한섭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1. 조례명 :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05.12.12 ~ 2006.1.3 (21일간)

3. 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4. 개정조례안 요목

·준칙안 서식 : 충청북도 세정과-9409 (2005.12.7)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천시세 감면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 함.

5.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입 법 예 고

제천시 공고 제 2005 - 695 호

제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2. 12.

제 천 시 장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령, 임대주택사업법령,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관련 조문을 개정함.

주요개정내용

○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m²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벤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를 면제대상에 포함

○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법령 개정으로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으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경감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불필요하여 감면조문 삭제 (제15조, 제21조)

○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50%경감하는 규정중 건축물이 건축물과 주택으로 분리됨에 따라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 · 지상건축물 · 주택으로 수정(제16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대상에 추가되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제22조)

-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시세감면조례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감면기한을 '05.12.31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계속적 감면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의 일몰규정이 삭제됨으로, 도세와 시세의 감면형평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기한 폐지(제24조)

□ 의견제출

이 재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월 3일까지 제천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번호 전화640-5261, FAX 640-525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을 미루면 이로 이천 세 악화되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창조
(경유)

제목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5220호(2005.12.06)의 이첩입니다.
 - 지방세 강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시달하니 각 시·군에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세 강면조례를 개정·시행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인 : 1.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 표준안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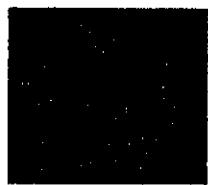
수신자 대01-12(세정업무관련과장)

협조자

시행 세정과-9377 (2005. 12. 06.) 접수 세정과-14163 (2005. 12. 08.)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618 / 전송 043) 220-2619 / pit1223@cb21.net / 콜개



개정이유

1.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토론회 채택안

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현황 및 문제점 】

- 임대주택사업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 국가의 귀책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감면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 발생

【 개 정 】

-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도록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를 추가

② 매입임대사업자 감면범위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

-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여하는 경우도 최초분양으로 보아야 하나
- 관련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로 최초분양과 건축 주라는 의미를 달리 해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사례 발생

【 개 정 】

- 건축주의 개념에 임대주택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

③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규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장기임대 목적으로 60㎡초과 149㎡이하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경감하고 있으나
- 20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20호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지자체 별로 해석상 혼란 발생

【 개 정 】

- 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0호 이상이 되는 경우 그 20호로부터 초과분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

④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

-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50% 경감

【 개 정 】

-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 · 지상건축물 · 주택으로 조문수정

2.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 주택거래신고지역내 매입임대사업자 감면축소

【 현황 및 문제점 】

- 미분양해소, 퇴직자 투자처 제공 등을 위해 도입된 매입임대 제도가 투기 및 세금도피처로 악용

【 개 정 】

-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을 매입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대상에서 제외
-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05.8.31이전에 임대주택사업용 부동산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파트신축기간을 고려, '08.8.31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부칙 마련

* 매입임대사업자 관련 표준안 시달 : '05.1.25

3.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① 자동차관리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m²미만인 화물 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

【 개 정 】

-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

② 지방세법 개정중

【 현황 및 문제점 】

-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감면조례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 감면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등록) 기한을 '05.12.31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기한 삭제

【 개 정 】

- 감면형평성을 위하여 시·군·구세감면조례 기한 폐지

③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중

【 현황 및 문제점 】

-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경감
-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불필요

※ 시·도의견 조회결과 분리과세 전환하면서 현행 감면규정 삭제를 조건으로 찬성

【 개 정 】

- 터미널용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삭제

④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 조특법 제121조의2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그 범위를 각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특법 제121의조2 제1항 제2호의 5, 6, 7,의 규정*이 추가
 - *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개 정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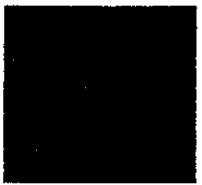
⑤ 임대주택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

【 개 정 】

-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00도00시·군세감면조례

00도00시 ·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00도00시 · 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중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의제1항제1호중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한다.

제21조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를 “창고용에”로 한다.

제23조제1호중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를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00도00시·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임대주택 수정안
<p>제2조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생략)</p> <p>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p>	<p>제2조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p>	

	<p>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p> <p>2.~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3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u> ① (현행과 같음)</p> <p>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p>	<p><u>제3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u> ① (현행과 같음)</p> <p>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p> <p>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p> <p>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p> <p>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p>
--	--	--

<p>2.~4. (생략) ② (생략)</p> <p>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p> <p>(본문 생략)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임대용 복리시설을</p>	<p>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p> <p>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p> <p>(본문 현행과 같음)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p> <p>1.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p>
--	--	--

<p>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3. (생략)</p> <p>② (본문 생략)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3. (현행과 같음)</p> <p>② (본문 현행과 같음)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p> <p>1.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p>
---	--	--

2 · 3. (생략)

제15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 【사권제한도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10. The following table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study.

제15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삭 제>

제16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토지 ·
지상 건축물 · 주택

2 · 3. (현행과 같음)

[제120회 임시회 제1차 회기 행정위원회 부록] 181

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	
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u>2005년12월31일까지</u>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취득하는

<p>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 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 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 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